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30 발의연월일: 2025. 4. 25.

발 의 자:모경종·박정현·박해철

채현일 • 허성무 • 최민희

박용갑 • 이광희 • 홍기원

김성환 · 정일영 · 윤건영

김문수 · 오세희 · 박지원

박희승 • 박홍근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 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갱신 대상자가 갱신을 연초에 하지 않다가, 연말에 갱신을 받아 현장에서는 대기시간 증가와 민원이 폭주하는 등의 문제 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갱신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운전면허 갱신 관련 기관의 업무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갱신 수요분산을 통한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부여하고 있는 갱신기간을 운전면허의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각각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증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
기 적성검사) ① 운전면허를	기 적성검사) ①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	
다.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1
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	
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	
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	
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	
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u>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u>
부터 12월 31일까지	<u>6개월 이내</u>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	2
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	
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
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u>날이 속하는 해</u>
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u>지</u>
② ~ ④ (생 략)

발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② ~ ④ (현행과 같음)